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결 재	행정실장	학교장	운영위원장
	고성호	차정숙	이미수

2022. 4. 8.

## 태인고등학교

# 태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일자 2022.4.8.] [개정 2022.4.8. 규정 제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태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개정 2006.3.1.>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태인학원 정관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태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

##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개정 2006.3.1., 2022.4.8.>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04.4.1. 조례2956호>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자로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4.8.>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5조 제3항 및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2.4.8.>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2.4.8.>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개정 2022.4.8.>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개정 2022.4.8.>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삭제 2004.4.1.>

###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4., 2018.1.30.>

**제8조(위원선출일)** 위원의 선출은 당해연도 3월에 실시한다. 단,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1명,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교직원 2명중에서 선출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4.1.>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4.1.>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로 전원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단 후보자가 2배수 미만 일 때는 무투표로 전원 추천한 후 교직원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기간제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2.4.8.>

**제13조(보궐선거)** ①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예비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3분의1을 넘지 못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기능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제13호는 자문한다.** <개정 2022.4.8.>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개정 2016.4.4.>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2.7.16.>
12. 교비회계 예·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8.4.1., 개정 2012.7.16.>
1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6.>
14.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신설 2012.7.16.>

15.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 계획 <신설 2016.4.4.>

16.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4.>

17.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4.>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학교법인태인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8.4.1.>

④제1항 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6.>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16.>

⑥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6.>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 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한다.

⑥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2.7.16., 2022.4.8.>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4.>

⑥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개최, 휴회, 폐회 및 기타 절차는 일반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4.8.>

**제22조(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16.>

② <삭제 2004.4.1.>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2.7.16.>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16.>

-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정관 제9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회의운영)** ①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 ②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장 심의(자문)사항의 시행 등 <개정 2022.4.8.>

- 제27조(시행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법인 태인학원 정관 제97조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28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07.16.>

## 제8장 규정의 개정

-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2조(기타사항)** 본 위원회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제정 2000. 4. 1 규정 제1호)**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0년 3월 31일자로 한다. 초·중  
등교육법(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7호) 및 동법시행 (2000년 0월 0일 대통령령 제 호)에  
의거 새로 설치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4. 4. 1 규정 제2호)**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714호 2002.8.26)에 의거  
개정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개정 2006. 3. 1 규정 제3호)**

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714호 2002.8.26)에 의거  
개정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8년 3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개정 2008. 4. 1 규정 제4호)**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714호 2002.8.26)에 의거  
개정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8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 2010. 4. 1 규정 제5호)**

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714호 2002.8.26)에 의거  
개정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0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2년 3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개정 2012. 7. 16 규정 제6호)**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4.4. 규정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위원은 그대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규정 제6조제1  
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부칙 <개정 2018.1.30. 규정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위원은 그대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규정 제6조제1  
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부칙 <개정 2022.4.8. 규정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